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21호 (2013-51) 발행일 : 2013. 12. 27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이 제시되었음

이러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처음으로 지급되는 2015년부터는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임



최현수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1.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개념 및 운영원리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근로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조세정책 관점에서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복지 정책 관점에서는 ‘소득세 체계를 활용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제도’로 표현할 수 있음

– 소득세 체계 내에서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도 현금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소득세 감면방식과는 상이하게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원리에 따라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제도인 동시에 조세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소득보장 제도(Hidden Welfare)

– 환급성은, 소득세 체계 내에서 면세점 이하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제도의 급여체계에 따라 산정된 급여액(공제액) 전부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리임

-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는 근로장려세제와 동일한 환급형 세액공제 원리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현금급여(자녀장려금)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2013년 세법개정안에 도입방안(2014년 시행 / 2015년 최초 신청 및 지급)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음

- CTC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급성 원리에 의해 면세점 이하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조세체계를 통해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는 차별성을 지님¹⁾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정책 수립 및 급여체계 설계,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담당하며, 국세청은 소득파악 및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1회 이루어지는 급여신청(5월) 및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9월) 등 정책 집행을 담당함

2.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개편 추진경과

- 근로장려세제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국정과제회의(2005.8)를 통해 결정되었음

○ 당시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준비를 거쳐 2007년 시행(2008년 최초 지급) 예정이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제도 시행이 1년간 유예되었음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세법개정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최초로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졌음

-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후, 2005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요 정책대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득파악 인프라를 개선하고 소득파악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 제1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2008년)

○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 받았으며 2008년 시행 이후 2009년 최초로 급여가 지급되기도 전에 제1차 확대 개편이 이루어짐

-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및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대상 및 최대급여액 등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최초 지급 당시부터 적용함

○ 제1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에 의한 주요 변화

【부양아동기준 완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1인 이상
【소득기준 유지】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	무주택 ⇄ 소규모 1주택(기준시가 5,000만원) & 일반재산가액(총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소득구간 유지】	점중(0~800만원) / 평탄(800~1,200만원) / 점감(1,200~1,700만원)
【최대급여액 확대】	최대급여액 연간 80만원 ⇄ 연간 120만원
【급여율 조정】	급여증가율 10% ⇄ 15% / 급여감소율 16% ⇄ 2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신청 제외
【지원대상 확대】	26만 가구 ⇄ 63만 가구 (37만 가구 ↑)
【예산규모 확대】	1,300억원 ⇄ 4,700억원 (3,400억원 ↑)

1) 최현수(2005).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2005년 2월호; 최현수(2007). '미국 CTC-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최근 동향',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년 여름호.

■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2011년)

○ 2011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2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2011년 세법개정에 의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주요내용은, 부양자녀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었던 무자녀 가구 중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총소득기준과 최대급여액을 자녀수에 따라 분리하여 이를 상향 조정한 것임

○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결과

【급여체계】 부양자녀수에 따른 급여체계 분리 운영

구분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 이상
점증	0~600	0~800	0~900	0~900
평탄	600~900	800~1,200	900~1,200	900~1,200
점감	900~1,300	1,200~1,700	1,200~2,100	1,200~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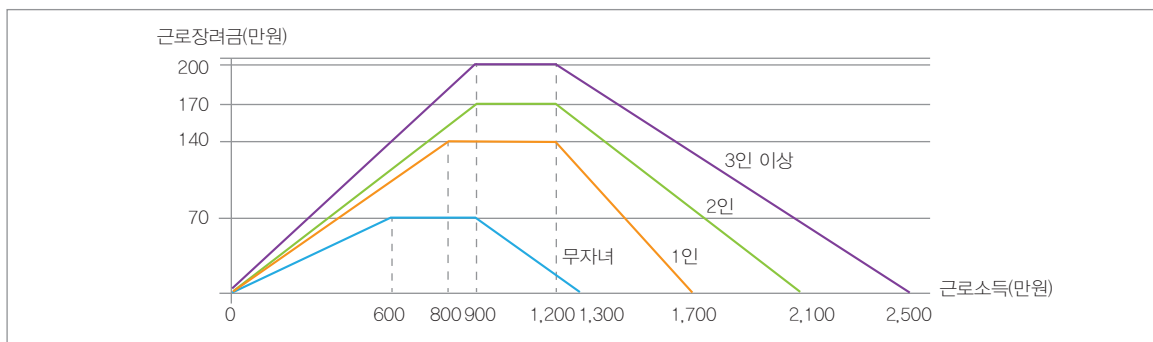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급여액 / 급여증가율(점증률) 및 급여감소율(점감률)】

부양자녀수	총소득기준	최대급여액	점증률	점감률
0인	1,300만원 미만	연 70만원	11.7%	-17.5%
1인	1,700만원 미만	연 140만원	17.5%	-28%
2인	2,100만원 미만	연 170만원	18.9%	-18.9%
3인 이상	2,500만원 미만	연 200만원	22.2%	-15.4%

【가구 재산기준】 소규모 1주택(기준시가 6,000만원) & 일반재산(총재산) 1억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4호(교육급여)의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신청 제외

-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에 의한 급여체계



○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이후 제도 개선 필요사항²⁾

- 1~2인 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구조 변화 및 1~2인 가구의 빈곤율 문제 등 사회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에서 배제된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한 적용 필요

2) 최현수(2011), 2011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0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양자녀수에 따라 급여체계를 분리하여 자녀 요소를 반영하였으나,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소득구간 및 급여수준의 차이를 더욱 확대하여 차등 적용 필요
- 급여체계를 확대하여 자녀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가구규모별 차상위계층 기준(최저생계비 120%)에 맞추었으나,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대상 집단인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세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총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 연동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저소득 근로능력가구의 근로활동 참가 등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점증구간 확대 및 급여증가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점증구간 경제소득이 연간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도록 최소한 1,000만원, 급여증가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최대급여액 확대 필요
-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 촉진과 근로활동 장려에 부합하도록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주택기준 완화 및 순재산 개념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홀벌이가구의 약 1.5배)함으로써 주로 가구 내 이차 소득자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marriage penalty) 최소화 필요

■ 제3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2012년)

- 2012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한 적용으로, 2013년부터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 탈 수급 촉진을 위하여 탈 수급에 성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용 확대
 - 탈 수급 촉진을 위해 신청년도 3월 중 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제외하고, 3월 이전에 탈 수급에 성공한 사람은 전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3. 근로장려세제 운영 현황 (2009~2013년)

- 2009년 최초 지급 이후부터 2013년까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개편에 따른 각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2009~2013년)

(단위: 천 가구,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신청가구	724	675 (-49, 6.8% ↓)	665 (-10, 1.5% ↓)	930 (+265, 39.8% ↑)	1,020 (+90, 9.7% ↑)
수급가구	591	566 (-25, 4.2% ↓)	522 (-44, 7.8% ↓)	752 (+230, 44.1% ↑)	769 (+17, 2.3% ↑)
근로장려금	4,537	4,369 (-168, 3.7% ↓)	4,020 (-349, 8.0% ↓)	6,140 (+2,120, 52.7% ↑)	5,480 (-660, 10.8% ↓)

자료: 국세청 각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보도자료 재구성

- 지난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약 400만 가구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누적 가구 수는 약 320만 가구임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된 근로장려금 누적지급액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수준임

- 최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 2009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총소득기준 미조정 등으로 인하여 신청 및 수급가구,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에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확대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수급가구 규모 약 75만 가구,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 약 6,1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개편과정에서 제시된 2012년 예상 수급가구 규모(약 110만 가구) 및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약 8,900억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가구가 처음으로 적용된 2013년의 경우, 2012년보다 신청 및 수급가구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약 660억원 감소하였음
 -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가구 적용으로 인해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무자녀 수급자의 비율은 '12년 31.6%에서 '13년 44.7%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급가구의 평균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12년 82만원에서 '13년에 71만원으로 감소함

4.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추진배경

- 제4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공약 및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관련 공약사항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

- 차상위계층 기준 확대(중위소득 50%)와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최대급여액 상향 조정
-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한 재산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확대 및 무자녀 단독가구 중고령층 및 청년층 단계적 적용 확대

〈 자녀장려세제 도입 〉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간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장려금 도입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도록 설계

- 140대 국정과제 중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관련 국정과제 주요내용

〈 (국정기조) 국민행복 - (추진전략) 맞춤형 고용·복지 〉

○국정과제 57(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①(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근로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소득기준, 점증구간·점증률 확대를 통해 최대급여액 인상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

○국정과제 62(행복한 임신과 출산) - ④(자녀장려세제 도입)

- 출산 문제 해소하기 위하여 임신 - 출산 - 육아에 걸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추진
- 자녀장려금 지원체계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4년 시행 / '15년 지급)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13.5.31)에서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음

○ 4대 국정기조 중 '국민행복'에 해당하는 79.3조원 가운데 기초연금(18.8조), 무상보육(11.8조), 기초생활 보장 급여체계개편(6.3조)과 더불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5.0조)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제시함

5.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 관련 주요내용

- 2013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의 특징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결혼여부(단독/가족가구) 및 경제활동여부(홀벌이/맞벌이)에 따라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자녀수에 따른 지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CTC)에서 적용하여 자녀 지원방식의 중복을 사전에 조정하고 단순화하는 것임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³⁾

○ (근로장려세제)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 (자녀장려세제) 자녀양육 지원 강화

-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족가구에 대한 총소득 기준 및 지원수준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총소득기준 확대 및 추가 지원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원

○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 ('14년 지급부터 적용)

- 가족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선정을 위한 부부합산 총소득기준을 1,300~2,100만원 이하에서 2014년부터 2,100~2,500만원 이하로 확대
-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총소득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무자녀 단독가구(연령기준 단계적 확대)의 경우 1,300만원을 유지하고, 홀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⁴⁾ 2,500만원으로 확대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장려세제를 신규 도입하여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세제와 동일

○ 재산기준 상향 조정 및 주택가액 기준 폐지 ('15년 지급부터 적용)

- 신청가구의 수급제외 사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재산기준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가액 기준(6천만원)을 폐지
- 재산기준 완화 구간(1억원~1억 4천만원)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대급여액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 '14년 지급 / 자녀장려금 '15년 지급)

- 가족가구의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 최대급여액을 70~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확대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자녀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점감구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최소 1인당 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소) 자녀장려금 지급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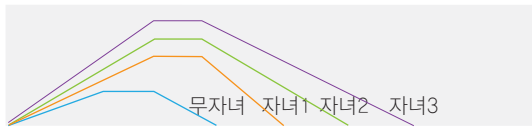
3)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13.8)',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설명 보도자료(2013.9)'를 중심으로 제시함

4) 맞벌이가구는 이차 소득자인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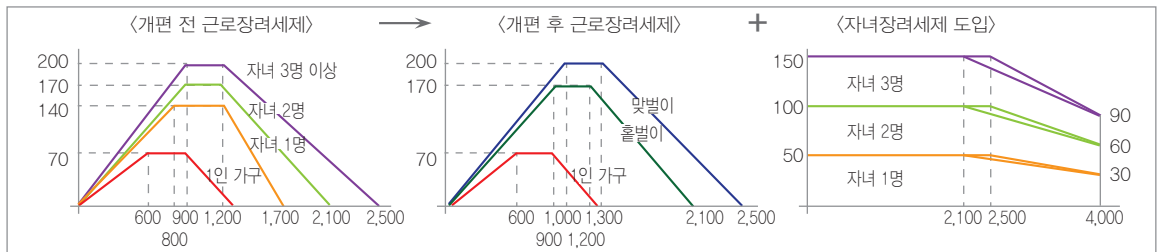
5)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지급하므로 '14년에 3자녀 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200→170만원)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10만원 지급

〈표 2〉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소득기준 및 최대급여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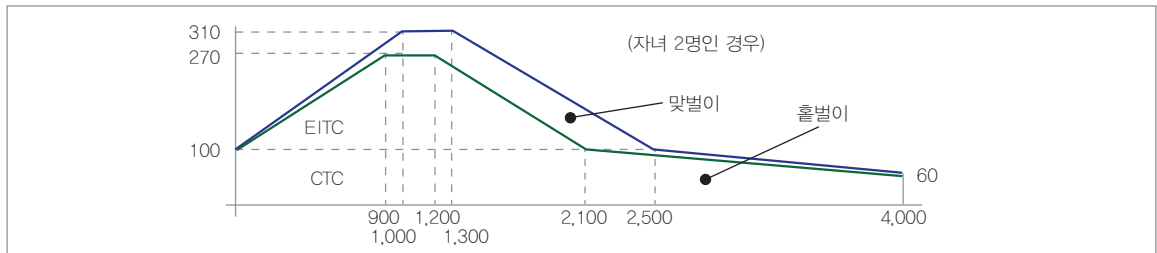
현행 (단위: 만원)					개편 (단위: 만원)				
구분	구간			최대 급여액	구분	구간			최대 급여액
	점증	평탄	점감			점증	평탄	점감	
무자녀	~600	~900	~1,300	70	단독가구 (연령기준 확대)	~600	~900	~1,300	70
자녀 1인	~800	~1,200	~1,700	140	가족 가구	홀벌이	~900	~1,200	170
자녀 2인	~900	~1,200	~2,100	170		맞벌이	~1,000	~1,300	210
자녀 3인 이상	~900	~1,200	~2,500	200	+				
					CTC	홀벌이	없음	~2,100	~4,000
						맞벌이	없음	~2,500	~4,000
									1인당 50



〔그림 1〕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급여체계 변화



〔그림 2〕 근로장려세제(EITC) & 자녀장려세제(CTC) 연계 적용 시 맞벌이여부에 따른 급여체계 예시



○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2009년 법 개정사항, '15년부터 지급)

－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가구('13년) → 50세 이상('16년) → 40세 이상('17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전면 확대 ('15년 지급부터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14.10)과 연계하여 2015년부터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에 자녀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에 대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맞벌이 요소가 반영되므로 부녀자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기존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지급요건 및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고 성격이 유사하므로 중복적용 배제
- 수급률 제고를 위하여 5월말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하되, 3개월 이내에서 10% 감액하여 지급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예상 수급가구 규모 및 재정소요
 -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의한 개편이 최종 시행될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규모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에 약 25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는 2012년 약 6천억원에서 2017년에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 제도로 위상이 제고될 것임

6.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 이번 개편방안은, 자영자 확대가 예정된 가운데 '13년 세수상황 등 제약조건 하에서 그 동안 제기된 근로장려세제의 한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에 제시된 개편사항을 대부분 반영함
 - 특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연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편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자녀장려세제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기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 지원방식에서의 중복 요소를 사전에 조정하고 제도를 단순하게 재구조화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위소득 50%로 확대되는 근로빈곤층 지원기준(차상위 기준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과 연계한 핵심적인 근로유인 제도로써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을 확대해야 하며, 근로유인 측면에서 점증구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를 수급자에 적용하면서 중복을 우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자녀장려세제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근로유인 및 탈 수급 촉진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탈 수급 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가구구성과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급여체계를 분리하여 맞벌이가구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당초 계획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것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자녀가 없는 가족가구의 급여체계 지나치게 확대된 점과 비교하면, 가구 내 이차소득자인 여성의 근로유인 측면에서 총소득기준 2,500만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향후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를 중심으로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점증구간 및 총소득기준의 집중적인 확대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중산층을 포괄하는 준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조세행정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임
 -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하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체계 등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여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집필자 | 최현수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 | 02-380-8146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